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2. 2. 11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양○승	92.10.08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종료 및 재참여 제한	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연속하여 2회 이상 미제출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종료 처분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수취인 불명	충남 논산시 (상세주소 제외)

4. 공고기간: 2022.2.11. ~ 2022.2.25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황성민(Tel. 041-731-86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